

대구지방법원 2024. 6. 5 선고 2023나305835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24. 6. 5 선고 2023나305835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2. 7 선고 2020가단14392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주택도시보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심우연

피고, 피항소인A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영관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파트원 담당변호사 오현근

변론 종결2024. 5. 1.

판결 선고2024. 6. 5.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2023. 2. 7. 선고 2020가단143929 판결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B와 C 사이에 2019. 2. 12. 체결된 매매계약, C와 D사이에 2019. 3. 26. 체결된 매매계약, D과 피고 사이에 2019. 3. 2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지법 E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서 2020. 6. 26. 작성된 배당표에 기하여 가지는 55,424,592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하고, 소외 대한민국(소관: 대구지법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재덕

판사박만호

판사김정일

별지